[별표 4] <개정 2025.6.2. 2026.5.28.>

가 점 기 준(제61조 관련)

1.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 해당 직렬(류)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5점

○ 해당 직렬(류)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25점

구 분	5 급	6·7 급	8·9 급
행정 통계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기술직			
공업 (기계)	기술사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기사 (일반기계, 건설기계, 산업안전)	산업기사 (일반기계, 건설기계, 산업안전)
공업 (전기)	기술사 (전기응용, 전기안전)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공업 (화공)	기술사 (화공, 화공안전, 가스)	기사 (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보건	기술사 (대기관리, 소음진동, 산업위생관리) 의사	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산업위생관리) 간호사	산업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산업위생관리)
시설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도시계획, 건설안전)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안전)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	기술사 (정보관리,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 공무원 채용 시 응시요건으로 이미 적용받은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점평가 할 수 없음 (동 규정 신설·시행<'20. 1. 9.>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 변경 전 규정에 의해 신규 임용 시 응시요건으로 적용받은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현직급에 한하여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이 2 이상인 경우 그중 하나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함

2.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점

근 무 경 력	가 점	비 고
①개방형직위 근무경력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4점	·해당계급의 경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되 각 경력마다 1점을 초과할 수 없음(단, 전문관 근무경력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자체감사담당공무원 근무경력과 청렴업무전담공무원 근무경력과 국민권익위원회 근무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만 인정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력과 전문관 근무경력, 재난·안전업무 근무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만 인정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점 합계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자체감사담당공무원 근무경력		
③청렴업무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단, 전담팀이 구성된 업무담당자에 한함)		
④행정기관간 인사교류 근무경력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무경력 포함)		
⑤전문관 근무경력	1년(재난·안전업무 근무경력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1월마다 0.04점	
⑥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근무경력		
⑦재난·안전업무 근무경력 (단, 재난안전수당을 지급받는자에 한함)		

3. 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점

근 무 경 력	가 점	비 고
특수지 가·나지역 근무경력	매 1월마다 0.05 점	해당계급의 경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되,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 합계가 1점을 초과할 수 없음
특수지 다지역 근무경력	매 1월마다 0.035점	
특수지 라지역 근무경력	매 1월마다 0.025점	

※ "특수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근무지를 말함

※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점은 정기평가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가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불산입

※ 재난·안전업무 근무경력 가점 대상자는 우리 부 「특수업무수당(재난안전업무) 지급계획」에 의한 지급대상자를 말하며, 근무경력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인 2026.7.1.이후부터의 수당지급기간으로 산정(2026.7.1. 이전 수당지급기간 소급 불가)

4. 실적가점

가 점 항 목	가점점수
① 담당업무 관련 제안채택	
○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채택시	
- 특별상	0.2점
- 우수상	0.15점
- 우량상	0.1점
○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우수제안 심사” 채택시	
- 금 상	0.5점
- 은 상	0.3점
- 동 상	0.2점
- 장려상	0.1점
② 업무추진실적 우수	
○ 인사혁신처 주관 “대한민국공무원상” 및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공무원” 수상자	
- 훈 장	1.0점
- 포 장	0.5점
③ 혁신 관련 실적 우수	
○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 금 상(최우수)	0.5점
- 은 상(우수)	0.3점
- 동 상(장려)	0.2점

※ 실적가점 부여절차
- 신 청 자: 해당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자에게 제출
- 확 인 자: 실적가점 신청내용을 재확인 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

※ 실적가점은 5점의 범위내에서 여타 가점기준을 제외한 점수를 부여하되, 각 항목별 가점 합계가 1점을 초과할 수 없음(예: ③ 혁신 관련 실적 우수 항목의 가점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적가점 변경사항은 동 변경 규정 시행일 이후 해당자부터 적용하며 해당 계급에 한하여 반영(변경 전 규정에 의해 이미 부여된 가점은 인정)

※ 실적가점은 입상(포상) 시 주도적으로 기여한 사람 1인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음